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28
----------	-------

발의연월일 : 2019. 11. 6.

발의자 : 오영훈 · 김성찬 · 황주홍
이양수 · 경대수 · 윤준호
김태흠 · 박완주 · 손혜원
박주현 · 손금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소한”을 “없앤”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구성 기타”를 “구성,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환급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라”로, “환급한다”를 “되돌려준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년 1월 8일 현재 해당 농어업인의 대출잔액이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u> ----- ----- ----- -----.
④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은 그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u>	④ <u>제5조에 따라</u> ----- ----- ----- <u>제2항에 따라</u> ----- ----- -----.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생 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대출된 자금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u>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 -----.

<p>2001년 1월 7일까지 농어업인 연대보증인이 부채 및 그 이자 를 상환한 경우 <u>당해</u> 상환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금은 2001년 중에 5천500억 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특별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고 지원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1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p> <p>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생략)</p> <p>② 정부는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u>해소한</u>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u>당해</u>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4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2003년 12월 31일”을 “연체해소자금 대출일”로 본다. 다만, <u>당해</u> 농어업인의 연체해</p>		<p>----- ----- ----- <u>해당</u> ----- ----- -----.</p> <p>③ ----- <u>제2항에 따른</u> ----- ----- -----. ----- ----- ----- ----- -----.</p> <p>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없앤</u> ----- ----- <u>해당</u> ----- ----- ----- ----- ----- -----. ③ ----- ----- ----- ----- ----- ----- ----- <u>해당</u> -----</p>
--	--	--

에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를 참
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 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제3
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
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할 때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3조
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
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를-----

